

성폭력 예방교육





1. 성폭력 예방교육

1 개요

가. 목 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 ※ [참고 1]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p.15 참조
- 교육 목표
 - 성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실적 점검을 통한 예방교육 내실화

나. 법적 근거

- 성폭력 정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3조

죄 명	구성요인	형 벌
강간 (제297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미수범도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미수범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미수범도 처벌	위 강간, 강제추행에 준함
강간상해/강간치상 (제301조)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강간치사 (제301조의2)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강간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 예방
 -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연혁

- 2010. 4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초·중·고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011.1.1 시행)
- 2011. 3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육시설 및 유치원까지 예방교육 확대 실시(2011.10.1 시행)
- 2012. 1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실시, 실적 제출 의무화(2013.6.19 시행)
- 2014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함께,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라. 「성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변경(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B유형(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 C유형(대학)

유형	평가항목	2013년		유형	평가항목	2014년													
		배점	세부내용			배점	세부내용												
계획수립	성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수립	10	미수립 (0)	계획수립 (10)	성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미수립 (0)												
			수립 (10)				계획수립 (10)												
교육 실시	교육실시 횟수	10	1회 (5)	기관장 참석	5	5	불참 (0)												
			2회 이상 (10)				참석 (5)												
	교육이수율	45	미실시 (0)	교육 참여 (45)	교육 이수율 (40)	직원	20	50% 미만 (10)											
			50~70% 미만 (25)					50~70% 미만 (10)											
			70~90% 미만 (35)					70~90% 미만 (15)											
			90% 이상 (45)					90% 이상 (20)											
	기관장 참석	10	미참석 (0)	교육 실시 (90)	교육 방법 (40)	학생	20	미실시 (0)											
			1회 참석 (5)					50% 미만 (5)											
			2회 참석 (10)					50~70% 미만 (10)											
	교육 방법	25	단순 훈시 (0)	직원	20	직원	20	단순훈시 등 (0)											
			내부직원 집합교육 (5)					①(집합) 내부직원 강의 (5)											
			시청각집합교육 (10)					②시청각교육(집합)											
			사이버교육 (1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0)											
			전문강사(집합)교육 (25)					(집합)외부강사 교육 (15)											
			(집합)전문강사 교육 (20)																
가점	3	홍보자료 자체 제작 (3)	교육 횟수(5)	5	1회 (3)	2회 (5)	1회 (3)												
		예산 반영 (2)					2회 (5)												
		미실시 (0)					50% 미만 (1)												
		50% 미만 (2)						50~75% 미만 (2)											
		50~75% 미만 (3)						75~100% (3)											
75~100% (5)	75~100% (3)																		
합계	100점(가점 110점)			가점	① 비정규직/ ②신규자 교육 (각3점)	6 (각3점)	50% 미만 (1)												
							우수 사례	교육 홍보 자료 제작	3	자체제작 (3)									
											자 체 점 검	3	점검 실시 (3)						
														만 족 도 조 사	3	50% 미만 (2)			
																	기 타 사 례	3	50% 이상 (3)
		실 적 제 출	-5	2월말 이후 제출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2 목 표

- ✔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관리체계 효율화
-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3 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사항

가. 계획수립

-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계획 수립(10점)
 -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
 - 성폭력 예방 자체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나. 교육실시

- 교육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 및 소속학생
-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90% 이상 이수 시 20점)
 -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 학생(유치원 원생, 보육아동)은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이며, 건전한 성인식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90% 이상 이수 시 20점)

- 학부모 예방교육 참여 독려(가점 3점)

□ 교육실시 횟수(2회 이상 5점)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연 1회는 가능한 대면교육실시(연 2회 이상 권장, 5점)

□ 교육방법(40점)

- 교육방법의 선택은 실시기관에 있으며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및 맞춤형 교육자료 적극 활용(전문가 교육 배점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대상(직원, 학생)에 따라 교육방법 배점이 분리되어 적용됨

-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전문강사 : 40점, 일반강사 : 30점)

-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을 통해 확인·활용

- ※ 동 사이트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40점), 그 외 강사의 경우(30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 설치된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①표준 프로그램으로, ②훈련된 종사자 등 직원에 의한, ③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하게 배점처리

- ※ 학교에서 학생대상으로 보건교사가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 적용

- 우리 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프로그램 사용 권고(우리부 홈페이지 교육자료로 등록중)

-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교육 권장

-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가점 3점)

- ※ 【참고 4】 교육만족도 평가지



○ 사이버 교육(20점)

-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여야 하며,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기관 단위로 신청 받아 교육과정 운영
 - * 교육관련 사항은 <http://egentrust.kigepe.or.kr> 및 이러닝센터 참조(02-3156-6138, 6176)

○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10점)

-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 소속 직원이 교육용 시청각 자료, PPT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하고 자체 예방활동, 징계 규정 등 기관내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 * 훈시 등 단순고지와의 차이점은 논리구조를 갖춘 교육자료에 의한다는 점이며, 교육자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단,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소속 직원이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 시청각 교육을 활용한 집합교육
 - 외부 강사 또는 내부직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부연 설명 없이 단순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교육 정보-우리부 교육자료-성폭력예방 교육자료’의 영상물 및 간행물 활용
 - *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안내, p.12 참조

○ 기타(교육 불인정 사례)

-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불인정

□ 교육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다. 가점 사항

학부모 교육(가점 3점)

- 초·중·고교의 경우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교육 권장함

비정규직 교육(가점 3점)

-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에게도 교육 기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되 이를 적극 권장

신규자 교육(가점 3점)

-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

우수사례 발굴(가점 12점)

- 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가점 3점)
 - 기관 실정에 맞는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교육·홍보자료 자체 제작·활용
- 소속 관리기관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가점 3점)
 - 기관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 ※ **【참고 3】** 자체 점검표 서식
- 만족도 조사 실시(가점 3점)
 - 성폭력 예방교육 후 교육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



※ 【참고 4】 교육만족도 평가지

○ 기타 우수사례 제출(가점 3점)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사례의 과정, 주요내용 및 성과를 작성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 실시
- 고위직,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 홍보 자료 제작 등 우수 사례를 제출하면 연말 우수기관 시상에 반영

※ 【참고 5】 우수사례 작성 서식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기준

Q

○○민간단체에서 발급해 준 성교육 수료증을 받았을 경우 전문강사 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A

● 전문강사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명단으로 확인가능

- ○○민간단체에서 발급해 준 성교육 수료증만으로는 전문강사 교육으로 인정이 안 됨

※ 유형별 예방교육은 동일 유형의 전문강사이어야 함

보건교사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Q

보건교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 보건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 교육으로 볼 수 있으나,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 내부 직원 교육임



성폭력 예방교육과정을 받은 교사의 직원교육 실시 가능 여부

Q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교사가 개인적으로 이수 하였을 경우 직원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되며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간주됨

공연도 교육으로 인정

Q

성폭력을 주제로 한 공연(연극, 뮤지컬 등)도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인정 되나요?

A

- 단순한 공연관람은 시청각교육으로 인정되며, 전문강사 또는 일반강사의 강의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전문강사 및 일반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을 간주됨

타 법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Q

다른 법률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전문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A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에 있는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은 예방교육 형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예정



2.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안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를 통해 예방교육 자료 제공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교육 정보' 배너



- 우리부 교육자료(성폭력·성매매·성희롱·가정폭력) / 교육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전문강사 안내

- 홈페이지 위측 메뉴에서 전문강사교육센터 > 전문강사뱅크

- 전문강사 찾기 > 분야별 강사 검색 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RSS

통합검색

검색

코사라기

전문강사소개
학습마당
위촉강사활동
전문강사뱅크
전문강사지원사업
참여마당
마이페이지

전문강사뱅크

전문강사뱅크 안내

- 전문강사 찾기

전문강사 강의모니터링

- > 강의 만족도 조사
- > 교육 후기

이달의 전문강사

전문강사 찾기

전문강사뱅크 활용에 관한 안내

본원 위촉 전문강사는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와 '영취물예방교육 전문강사',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전문강사', '성인지(性認知)인권통합교육 전문강사' 분야로 구분됩니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교육분야/지역/주요교육대상별 검색 기능을 통해 기관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강사를 찾아 직접 협의하시면 됩니다.
'지역' 및 '주요교육대상' 항목은 전문강사가 해당 지역과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검색되지 않습니다.

○ 전문강사 검색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지역
성별
주요교육대상
이름순
이름
검색

○ 자주하는 질문

Q 강사추천을 해 주세요.

A 본원 전문강사 양성과정 민간교육수강을 통해 위촉받은 강사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분야 및 지역별 검색과 프로모션 및 강의모니터링 여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강의료가 정해져 있나요?

A 강의료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강사와 직접 협의하시면 됩니다.

Q 강사 프로모션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검색된 리스트에서 강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요경력 및 활동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문강사 찾기를 통해 검색된 강사의 강의 실력이 어떠한지 궁금해요.

A 강사의 현직이나 강의이력 등을 보고 변별의 기준을 삼으시고 모니터링어부와 주요활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4



【참고 1】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성폭력 예방 교육만 해당됨)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u>교육부통계연보(2014.4.1. 기준)상 존속하는 기관</u>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 집, 민간어린이집 ※ <u>2014.4.1. 기준 설치된 기관</u>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대학, 경찰대학,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폴리텍학교 등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안전행정부고시(제2013-63호) 참조(안행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

【참고 2】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73호, 2012.12.18.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03.23. 타법개정]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p>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가사를 양성하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p>	<p>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73호, 2012.12.18. 일부개정]</p>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03.23. 타법개정]</p>
<p>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p>	<p>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p>④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⑥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p>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18호, 2014.1. 21. 일부개정]</p>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년 하반기 개정 예정)</p>
<p>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p>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18호, 2014.1. 21.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년 하반기 개정 예정)
<p>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21></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4.1.21></p>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p> <p>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18호, 2014.1. 21. 일부개정]</p>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년 하반기 개정 예정)</p>
<p>다. <신설 2014.1.21>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1.21></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731호, 2013.4.5. 타법개정]</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731호, 2013.4.5, 타법개정]</p>	
<p>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731호, 2013.4.5, 타법개정]	
<p>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p> <p>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p> <p>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p> <p>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p> <p>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p>	

【참고 3】

자체 점검 서식*

※ 교육 자체 양식은 교육 유형, 기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기관명 :

○ 수검자

 - 담당자 :

 - 확인자 :

○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기관장 참여

 - 교육 참여율

 ※ 기관장, 고위직 참여율 조사 등

 - 예방교육 우수사례

 - 교육 미실시 사유

점검관 직위(급) 성명 (인)
 직위(급) 성명 (인)



【참고 4】

교육만족도 조사(예시)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귀하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 ①영유아 ②초등학생 ③중학생 ④고등학생 ⑤기타
	만 19세 이상 ⑥20대 ⑦30대 ⑧40대 ⑨50대 ⑩60대 ⑪7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여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안전하다 ②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보통이다
 ④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모름/무응답

9.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등록 예정

【참고 5】

기타 우수사례 작성 서식

※ 1장내의 작성 요청

사례명			
소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례소개 (요약)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추진내용 및 추진실적 (성공요인 등 포함)	
성과 및 기대효과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등록 예정